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각종 기관 및 단체, 기업 등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이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(안 제3조 및 제4조)
- 협약 등의 관리(안 제5조)
- 의회 보고 등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가 국·내외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·연구기관, 각
 종 단체·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
 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.
- 안 제2조에서는 '업무제휴'과 '협약'의 정의에 대하여.

※ MOU(양해각서)와 MOA(합의각서)의 차이점

-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, 양해각서, 업무협약서 등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정한 문서로, 법적 구속력은 없음.
-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'합의각서'를 의미하며,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,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.
- 안 제3조에서는 '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 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'라는 구청장의 책 무에 대하여
-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예외 규정에 대하여,
- 안 제5조에서는 협약 등의 관리에 대하여,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

고 있음.

-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 해하는 것인가에 대해.
- 법제처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가 어렵고, 의회 보고의 경우 반드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,
- 또한「지방자치법」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·확정, 결산의 승인 및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대한 보고가 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.
- 향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(법제처 의견제시 22-0011)
- 참고로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음
- 동 제정안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제언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<u>원안가결</u>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